



12·29여객기참사 지원·추모위원회 관인

-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4518호) 제33조 제2항에 따라,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」 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규 조각·등록

- (최초 사용일) '26. 5. 20.

12.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인 (크기 : 36mm×36mm)	12.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(크기 : 36mm×36mm)
	

- 지원·추모위원회 명의 발송 문서 등 관인 날인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문서에 등록 관인을 사용

-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「민간전문가 자문단」 자문위원 위촉장 날인 등